

대전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가단123912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강창조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흥판기

변론 종결2023. 4. 12.

판결 선고2023. 5.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는 원고에게 17,212,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22. 2.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22. 2. 11. 접수 제19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송금내역

원고는 원고와 교제하고 있던 피고 B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2. 5. 17.부터 2020. 10. 28.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17,212,98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1	2012. 5. 17.	480,000원	17	2014. 9. 28.	700,000원
2	2013. 10. 20.	200,000원	18	2014. 10. 19.	300,000원
3	2013. 11. 22.	1,300,000원	19	2014. 11. 5.	700,000원
4	2013. 12. 13.	250,000원	20	2014. 12. 25.	1,500,000원
5	2014. 1. 2.	200,000원	21	2015. 1. 10.	200,000원
6	2014. 1. 22.	230,000원	22	2015. 2. 2.	300,000원
7	2014. 1. 25.	200,000원	23	2015. 3. 10.	200,000원
8	2014. 2. 5.	200,000원	24	2015. 3. 30.	200,000원
9	2014. 2. 24.	400,000원	25	2015. 5. 13.	62,980원
10	2014. 3. 25.	500,000원	26	2015. 10. 23.	250,000원
11	2014. 4. 6.	250,000원	27	2017. 5. 25.	500,000원
12	2014. 4. 27.	650,000원	28	2017. 7. 12.	2,000,000원
13	2014. 5. 27.	570,000원	29	2017. 11. 19.	1,000,000원
14	2014. 6. 25.	750,000원	30	2019. 9. 4.	550,000원
15	2014. 7. 28.	570,000원	31	2020. 10. 28.	300,000원
16	2014. 9. 7.	1,700,000원	순번 1~31 송금액 합계 17,212,980원		

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구입 관련

원고는 2014. 6. 27. 피고 B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매수하면서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B 명의로 350만 원을 18개월간 분할납부 조건으로 대출받았고, 2014. 7. 22. 피고 B가 납부한 2014. 7.분 할부금을 상환한 후 2014. 8. 13. 피고 B로부터 위 화물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위 대출채무도 인수하여 2014. 8.분 할부금부터는 직접 할부금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의 문자메시지 교환내역

원고와 피고 B는 2017. 8. 18.부터 2018. 11. 20.까지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주고받았다.

2017. 8. 18.

A 돈해줘라 얻는 지금 날짜도 지나고 돈 달나고 하니까 정리할 거 하자 깨끗하게 오전 중에 해줘라
어차피 끄라는거 아니냐 내가 잘 살지 니가 잘 살지 나보다 니가 더 나자나 서류까지 훑쳐가 다해주고
사니까 대번에 변심을 품어 당하는게 바보 아니냐 내가 병신이지 누굴 탓하게냐 그러나 정니해줄게
B 난 처음부터 돈 빌릴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1월까지지는 달라고 안 한다 해서 빌렸던 거지 그런데
또 이런 식이냐 참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군

2017. 11. 1.

B 무슨뜻이야 내가 저번 3만원 빌려달라는 것을 말하는건가 사람이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건지
정말 숨막히게 힘드네 마음같아선 얼른 돈 벌어서 당신 돈도 얼른 갚아야 하는건 생각뿐이고 지금
내가 넘 답답해 돈 3만원 빌려달란 말 정말 미안하고 염치없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
내가 누구를 빼먹으려는 건 아닌데

2017. 11. 2.

B 도지값 주는 날인데 돈이 없어서 방앗간에 왔는데 말이 안 떨어지네

2017. 11. 19.

A 돈너어서

B 고마워 필히 갚을께

2018. 1. 12.

B 내가 4월에 갚는다 했잔아 기다려 그래 목적은 그거지 왜 돈애기가 안 나오나했다

2018. 9. 12.

B 바빠 지금 그렇지 왜 돈얘기 안하나했다 값아야지 기다려 그것이 늘 무기였어

2018. 11. 12.

A 내가 너한테 왜 이러는가 생각해바 난 엄청난 서운한 걸 여지껏 참고 참아 와서 지렁이도 발부면
꿈틀거리는거 니가 뒤돌아 생각해바 니가 한 해동들 가식적이었나 아닌가 그래도 나는 참고 너랑 계속
교재를 해야 되니 너한테 나는 조금도 해를 끼치며 살지는 안 해서 알아 (계좌번호 1 생략) E조합

B 시간이 안돼서 좀 만날 시간이 없었다고 또 끝날 것처럼 돈 타령이야 내가 안 값는다는 것도 안고
값겠다잔아 그럼 그 돈 때문에 만나고 아니면 또 헤어지고 혼자 판단해 알겠어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지금은 돈이 없어 하우스라도 팔리면 되는데 그것마저 사람이 안 나타나네 값을거야 떼어
먹진 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시간이 걸릴 뿐이지 떼어 먹지 않을 거야 나도 그놈에 돈 때문에
남자만나 등쳐먹는건 내가 용납이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A 내가 돈 못 받아서 이러는 줄 아냐 돈 달라고 때 쓰는거냐 야 생각해바 내가 화나고 서운한게
성질나는게 서울 가다와서 너 몇번 약속하고 해다 밥뿌고 아파서 못 만나다하자 너 시간업고 바쁘고
아파서 시간을 못 내는 사람이 너 만날 사람 다만나고 너 할 짓은 다하고 다니고 내가 불적에 이해가
가냐 단 몇분도 시간을 못내는데 어째 그재만해도 너 와다간줄 알아 그러면 이만저만해서 잠깐 시간
내서 와내 하며 전화도 안 해주고 살며시 가고 그런걸 알면서 내가 먼 생각이 드냐 나한테는 시간이
업다하고 저러게 다닐 적엔 난 머냐 니 하수인이냐 너 김장하러 와서도 전화 한번 해줘냐 내가
만나자고 할까미 너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자나 니 맘을 털어노은게 겨우 내 맘대로 하라고 그랴 할 게

B 내가 분명 하우스가 이상이 있다해 급하게 왔다간다 했지 아무리 무슨 설명을 해도 안 되잔아 그래
무슨 설명을 해 모두 내 잘못인 걸 나도 이제 힘들어 툭하면 돈 달라고 내가 떼어먹는다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 당신이란 사람 돈을 써서 이렇게 툭하면 돈 내놓라고 참 없는 게 죄라더니 죄인 아닌 죄인이
되버렸네 당장 값아야되는데

2018. 11. 15.

A 직금 어디여

B 하우스를 정정당당히 계약했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정정당당히 한 건지 길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돈은 값는다잔아 조금만 기다려

A 하우스 이달말까지여 알아서해 그리고 너 오늘 돈 안르면 내일부로 해줄거 이게 어서 날 깐보고 잃어

B 돈은 일부만 줄게 빌려도 일부밖에 안 돼 조금만 기다려줘 하우스는 못 비워 당신들 맘대로 이중계약 해놓고 비우라고 난 이해못해

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

피고 B는 원고에게 2021. 5. 12. 20만 원, 2021. 5. 31. 58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마. 내용증명 등 교환

1) 원고는 2021. 9. 15. 피고 B에게 아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차용금 변제 최고 등

2. 다름이 아니오라 귀하께서 2012. 5. 17.부터 2020. 10. 28.까지 32회에 걸쳐 본인으로부터 17,683,000원을 차용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19. 5.경부터 수차에 걸쳐 구두 및 전화상으로 반환요구 하였으나 지금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송부하니 그 차용금을 2021. 9. 25.까지 본인에게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한까지 반환치 않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법적조치 계획을 알려드리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또한 귀하께서 변제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1. 9. 27. 원고에게 아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답변서

1. 귀하가 보낸 내용증명 2항에 대한 답변

발신인(B)는 수신인(A)이 주장한 2012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차용금 1,700여만 원의 채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수신인(A)은 발신인(B)의 명의로 강제로 카드개설(F카드)을 진행하였으며 카드를 수탈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강제 수취한 카드를 사용한 후 그에 따른 카드사용 금액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본 발신인에게 사용대금을 이체하였음을 밝힙니다. 이는 발신인의 통장이체내역 및 카드사용대금 납부확인서 대조 가능합니다(카드사 사용내역서 존재). 2014년 6월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트럭을 수신인(A)이 본 발신인(B)의 명의로 구매 총 350만 원의 대출을

D에서 진행하여 구매한 사실이 있으며 그에 따른 대출원금도 본 발신인(B)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밝힙니다(D 대출금상환내역서 존재, 트럭 명의이전 기록 존재). 또한 수신인(A)이 이전에도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발신인(B)는 2021년 총 600만 원을 수신인에게 이체 상환한 기록이 있음을 밝힙니다. 이에 본 발신인은 수신인(A)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4, 갑 2호증의 1, 2, 갑 3,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9,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6, 갑 14호증의 1, 2, 갑 16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2. 5. 17.부터 2020. 10. 28.까지 피고 B에게 합계 17,212,98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7. 8. 18.부터 2018. 11. 15.까지 수차례에 걸쳐 빌린 돈을 갚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피고 B는 위 대여금이 원고가 사용한 피고 B의 카드대금, 원고가 피고 B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할부대금,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빌린 돈 등을 변제한 것이라거나 일부 대여금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6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더 이상 대여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 B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피고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 B가 일부 대납한 자동차할부대금은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고 B로부터 변제받은 600만 원은 이 사건과 별개의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17,212,98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우선 제1의 가.항 기재 송금내역 순번 29번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 B가 2017. 11. 19. 원고로부터 돈을 넣었다는 문자를 받고 이를 갚겠다고 답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제1의 가.항 기재 송금내역 중 원고가 2017. 11. 19. 피고 B에게 송금한 순번 29번의 100만 원이 대여금임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제1의 가.항 기재 송금내역 순번 1~28번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 B가 2017. 8. 18. 원고에게 "난 처음부터 돈 빌릴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1월까지는 달라고 안 한다 해서 빌렸던 거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 B가 2017. 8. 18.

이전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제1의 가.항 기재 송금내역 중 2017. 8. 18. 이전에 해당하는 순번 1~28번이 전부 대여금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위 송금내역 순번 1~28번의 송금 당시 원고와 피고 B가 교제하는 사이였던 점, 위 기간에 원고가 적으면 62,980원, 많으면 200만원(마지막인 순번 28)을 28회에 걸쳐 송금하였는데 2013. 10.부터 2015. 5.까지에 해당하는 순번 2~25번의 경우 거의 매월 1회 이상 송금하여 교제 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의 대여금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 B가 2017. 8. 18.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반복적인 대여가 아닌 1회적인 대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의 차용금 변제최고에 대하여 피고 B가 원고가 피고 B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사용 대금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체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는 답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원고가 당시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순번 1~28의 송금내역 중 대여금이 아닌 금액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여지가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제1의 가.항 기재 송금내역 순번 30~31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9. 9. 4. 55만 원, 2020. 10. 28. 30만 원, 합계 85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금액이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원고가 피고 B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할부대금 중 피고 B가 대납한 금액을 이미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의 주장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해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으로 추정되고 피고 B가 대여금이 아님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21. 5.경 변제받은 600만 원은 원고가 제1의 가.항 기재 송금내역과는 별도의 대여금(2020. 2. 8. 300만 원, 2020. 2. 10. 100만 원, 2021. 4. 10. 2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별도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역시 이를 대여금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제1의 가.항 기재 송금내역 순번 29 100만 원이 대여금임은 인정되나, 순번 1~28 중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가 피고 B로부터 2021. 5.경 변제받은 600만 원에 의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존 대여금 액수를 알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고 B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22. 2.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준호

별지